내 압 용 기 검 사 업 무 규 정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목 차

제1장 총칙1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2장 내압용기 검사 등2
제4조 내압용기 검사 계획수립 등2
제4조의2 내압용기 검사 안내 등
제5조 검사 시행 등
제5조의2 검사원의 자격 등
제6조 교육 및 지도ㆍ점검 등
제6조의2 윤리강령의 준수 등4
제6조의3 안전수칙의 준수 등4
제3장 검사용 기계·기구 관리 등4
제7조 검사기기 소급성
제8조 검사기기의 관리 등
제8조의2 일상점검
제8조의3 공기구 등의 관리5
제9조 예비부품 및 소모품
제4장 각인의 관리5
제10조 각인의 종류 및 규격5
제11조 각인의 지급 및 관리6
제12조 각인의 반납 및 파기
제5장 출장검사장 운영 등6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부 최			7
제15조	세부지침 등	<u>:</u>	-7
제6장 보	.칙	•••••	7
제14조	출장검사장	계약 등	-7
제13조	출장검사장	운영 등	-6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2012.10.31 제정(규정 제980호) 2015. 5.19 개정(규정 제1065호) 2017.12.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규정제1160호) 2018.1.5 개정(규정 제1167호) 2018.7.31. 개정(규정 제1189호) 2020.3.5. 개정(규정 제1272호) 2021.6.23. 개정(규정 제1333호) 2024.3.18. 개정(규정 제1333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4>
- 제2조(적용범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동차용 내압용기 검사업무 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고시 등을 포함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정 2015.5.19., 2018.1.5.>
- 1. "내압용기 검사"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 내압용기 정기검사, 내압용기 수시검사를 말한다.
- 2. "재검사"란 내압용기 정기검사 또는 내압용기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 차가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내압용기검사장"이란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를 시행하는 지역별 거점이 되는 내압용기검사장을 말한다.
- 4. "주무부서"란 공단 본사에서 내압용기 검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소관부서"란 내압용기검사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의 내압용기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 6. "검사책임자"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기술 인력을 말한다.
- 7. "내압용기전산망"이란 공단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이하 'VIMS'라한다)에서 내압용기검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3.18>
- 8. "일상점검"이란 검사기기의 점검을 말한다. <신설 2020.3.5>

제2장 내압용기 검사 등

- 제4조(내압용기 검사 계획수립 등) ① 지역본부의 장은 관할지역의 내압용기 검사장별로 다음 연도의 검사계획(수입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24.3.18>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은 내압용기 검사의 수요 및 기술 인력을 고려하여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검사계획을 확정하여 지역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라 2개월간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전날에 예약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간 검사 계획을 내압용기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5.19. 2020.3.5. 2024.3.19>
- 제4조의2(내압용기 검사 안내 등) ① 주무부서의 장은 내압용기 검사기간 경과 자동차 발생 예방을 위해 검사유효기간만료일 62일 전에 정기검사 기간, 검사장소, 검사처리시간 및 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검사예약 사항과 다르게 내압용기 검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정해진 검사일 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예약 또는 검사안내한 날에 내압 용기 검사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기기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즉시 검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7.31.]

- 제5조(검사 시행 등) ① 내압용기 검사는 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장, 출장검사장 또는 이사 장이 승인한 시설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내압용기 장착검사는 자동차 제작자의 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 ② 내압용기 검사의 수수료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하며, 내압용기 장착검사 출장 시행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내압용기 교체 사유로 내압용기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와 재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검사 수수료를 적용하여 받는다. <개정 2015.5.19., 2020.3.5., 2024.3.18>
- ③ 내압용기 검사는 기술인력 2명이 1개조로 구성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경우 검사책임자 1명이 검사원 2명으로 2개조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원 1명으로 내압용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8.1.5., 2024.3.18>

- 1. 내압용기 장착검사
- 2. 내압용기 재검사
- 3. 내압용기 튜닝검사
- ④ 교육,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검사물량 급증·집중으로 검사능력을 초과한 때에는 인접한 지역본부 내압용기 검사 인력 지원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검사인력을 지원 받거나 해당 소속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1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 ⑤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업무 종료 후 접수현황 및 결과현황을 대조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고, 접수현황 및 결과현황은 내압용기전산망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일일 결산이 곤란한 경우는 임시 결산 후 다음날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2021.6.23.. 2024.3.18>
- ⑥ 소관부서의 장은 당월에 검사기간(재검사 기간을 포함한다)을 경과한 자동차가 발생할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⑦ 소관부서의 장은 당월 검사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을 내압용기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등) ①내압용기 검사원의 자격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술 인력의 구분·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다.
- ② 주무부서의 장은 검사원 중 결원 발생, 인력증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원에비 기술인력에 대한 선발 공모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검사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 2. 검사를 허위로 실시하거나. 내압용기 결과표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3.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본조 신설 2024.3.18.]

- 제6조(교육 및 지도·점검 등) ① 주무부서의 장은 내압용기 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1.>
- 1.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 3. 임시교육: 내압용기 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실시하는 교육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8.7.31.>

- ③ 주무부서의 장은 내압용기 검사 업무 및 기계·기구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1.. 2024.3.18>
- ④ 삭제 <2024.3.18.>
- **제6조의2(윤리강령의 준수 등)** ① 검사원(검사책임자를 포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내압용기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원(검사책임자를 포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제29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다

[본조 신설 2018.7.31.], <개정 2024.3.18>

- **제6조의3(안전수칙의 준수 등)** ① 주무부서의 장은 내압용기검사업무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검사업무 근무자에 대한 사고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 ② 검사업무 근무자는 내압용기검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업무 중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 해야 하다
- ③ 검사업무 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별표5의 내압용기검사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업무 안전수칙은 출장검사장에서의 내압용기검사 업무에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1.6.23.] <개정 2024.3.18.>

제3장 검사용 기계 · 기구 관리 등

- 제7조(검사기기 소급성) ① 주무부서의 장은 계측기에 대하여 교정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표준 기본법에 따라 인정 검사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19>
- ② 별표2의 대상 기기 및 교정주기는 사용목적, 환경,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 ③ 제1항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은 경우 교정검사 결과를 다음 검사 받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 제8조(검사기기의 관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기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내압용기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관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8>
- ② 기기 관리책임자는 검사기기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정비· 보수를 통하여 제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2024.3.18>

- ③ 점검결과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고장 또는 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고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기관리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기기 고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 ④ 검사기기의 교체는 주무부서의 장이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 또는 기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도달 이전에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 1. 빈번한 고장발생으로 내압용기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2. 수리 불능 또는 수리비용이 취득 금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 ⑤ 소관부서의 장은 검사기기 인수 시 받은 사용설명서, 정비매뉴얼을 보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전산 파일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 ⑥ 주무부서의 장은 검사기기의 관리전환 또는 불용·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물자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2024.3.18>
- 제8조의2(일상점검) 검사원(검사책임자를 포함)은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별표 4의 "검사기기 일상점검 요령"에 따라 검사 시작 전 점검을 시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기기일상점검표"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을 내압용기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작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5.>. <개정 2024.3.18>
- 제8조의3(공기구 등의 관리) 검사기기용 공기구 등의 관리는 물자관리지침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소모성 공기구는 시설관리비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0.3.5>
- 1. 수동 또는 전동 드라이버
- 2. 니퍼, 플라이어, 일반공구 등
- 3. 안전 용품
- 4. 기타 사용빈도에 따라 손상 되는 물품
- 제9조(예비부품 및 소모품) ① 주무부서의 장은 예비부품 및 소모품을 확보하여 내압용기 검사장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받은 기기 관리책임자는 수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각인의 관리

- 제10조(각인의 종류 및 규격) ① 내압용기검사에 사용하는 각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 과 같다.
- ② 각인은 각인별 관리번호를 각인의 몸통에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각인의 지급 및 관리) ①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 조에 따른 각인을 소관 부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1. 내압용기검사장을 개설하는 경우
- 2. 각인의 마멸, 훼손 또는 분실 한 경우
-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각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각인대장에 제작· 지급·반납·폐기 등 각인이력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③ 소관부서의 장은 내압용기검사장 별로 검사책임자를 각인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각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각인관리대장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각인관리책임자는 각인을 사용하려는 때 및 사용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각인사용 대장에 사용내용, 반출・반입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내압용기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8>
- 제12조(각인의 반납 및 파기) ① 소관부서의 장은 각인이 마멸, 훼손 또는 분실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각인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주무부서의 장은 반납 받은 각인을 파기하려는 때에는 각인관리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각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제5장 출장검사장 운영 등

- 제13조(출장검사장 운영 등) ① 지역본부의 장은 관할 내압용기검사장으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경우로서 압축천연가스 버스가 100대 이상 등록된 지역에는 내압용기 검사를 위한 출장검사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별도로 승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9, 2018.1.5, 개정 2024.3.18>
- ② 제1항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의 시설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확인하여 지정 승인을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2018.1.5 개정 2024.3.18>
- 1. 대지 및 건물에 대한 2년 이상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2. 시설 사용료 등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내용. 이때 시설 사용료는 [대지(공시지가)+건물 (감정평가액)]의 1천분의 25이내로 한다.
- 3. 내압용기 출장검사장으로서 갖추어야할 시설 규모
- 가. 검사장의 규모는 길이 15m 이상, 너비 7m 이상, 높이 5m 이상일 것
- 나, 대형버스의 진입 및 진출(후진으로 진출 가능)이 원활 할 것

- 다. 사무실 및 수검자 대기실 면적은 10㎡ 이상일 것
- ③ 제2항에 따라 출장검사장 지정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검사 예상대수 및 검사인력 운영 등을 검토하여 출장검사장 지정 승인 여부를 지역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2015.5.19., 2018.1.5., 2024.3.18>
- 제14조(출장검사장 계약 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사장의 지정 승인 통보를 받은 지역본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압용기 출장검사장 시설사용계약서 양식을 적용하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출장검사장 지정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2018.1.5., 2024.3.18>

제6장 보칙

제15조(세부지침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압용기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980호, 2012.10.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종전의 방침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내압용기 검사계획 수립 등의 적용례)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압용기 검사의 계획수립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날부터 수립한다.
- ② 제5조제2항 단서의 내압용기 검사의 수수료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065호, 2015.0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규정관리규정) <규정 제1160호, 2017.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1167호, 2018.0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89호, 2018.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72호, 2020.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33호, 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62호, 2024.3.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표 1](제10조 관련)

각인의 종류 및 규격

각인 명	규 격	관리번호	자 형
검사기관의 약호			TS
아라비아 숫자	가로×세로 6mm×10mm	TS - 해당문자 - 일련번호	12345 67890
지움 각인	X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표 2](제7조제2항 관련)

교정검사 대상기기 및 주기

기기명	교정 주기	적용법
깊이측정기	12월	국가표준기본법
버니어캘리퍼스	24월	n
초음파두께측정기	24월	n
가스누설검지기	12월	없음

주:

- 1. 교정검사 기간은 교정주기의 이전의 교정일자가 속하는 달에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기 관리 효율을 위하여 교정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정을 받지 아니한 계측기로는 관정할 수 없다.
-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대상이 아닌 가스누설검지기는 제조사 등의 성능확인이나 시험 등으로 교정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표 3](제6조 관련) <신설 2018.7.31.><개정2021.06.23.>

자동차 내압용기 기술인력 교육기준

1.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가스기초 및 관련 법령	10시간 이상	· 자동차관리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검사기기 및 현장실무 안전보건교육	160시간 이상 (안전교육, 현장교육 등)	 · 검사기기 운영관리 · 검사방법 및 판정 관리 · 특별교육(압력용기 16시간)

2.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내압용기 관련법령	2시간 이상	· 자동차관리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가스 관련법령	1시간 이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검사실무 및 기기	3시간 이상	· 검사요령 및 판정 관리
검사표준화	4시간 이상	· 불합격 유형분석

3. 임시교육

교육관련	교육시간	교육내용
법령 제정 및 개·폐	2시간 이상	· 자동차관리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검사업무 개선	2시간 이상	· 고객만족
최신기술	6시간 이상	· 내압용기 자동차 · 고압가스 연료장치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표4] (제9조 관련) <신설 2020.3.5.> <개정 2024.3.18.>

검사기기 일상점검 요령

종류	구분	점 검 요 령
	자동저상 버스 검사대	 ○ 구동장치와 제어부(리모컨포함) 전원상태를 확인한다. ○ 제어신호에 따른 정상작동(상하좌우·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 유압실린더 등 오일류의 누유를 확인한다. ○ 구동 및 마찰부위의 윤활상태를 확인한다. ○ 디딤판 유격, 와이어손상, 난간 흔들림 상태를 확인한다.
	저상버스 검사대	○ 이동바퀴 유격과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 디딤판 유격과 난간 흔들림 상태를 확인한다. ○ 조립 및 용접 부위 결속상태와 균열을 확인한다.
	피트 리프트	 ○ 구동장치와 제어부(리모컨포함) 전원상태를 확인한다. ○ 제어신호에 따른 정상작동(상하・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 유압실린더 등 오일류의 누유를 확인한다. ○ 구동 및 마찰부위의 윤활상태를 확인한다. ○ 피트 유격과 걸림쇠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리프트 하부 및 동력 작동부 이물질과 장애물을 확인한다.
검사시설	소형 리프트	○ 구동장치와 제어부(리모컨포함) 전원상태를 확인한다. ○ 제어신호에 따른 정상작동(상하·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 유압실린더 등 오일류의 누유를 확인한다. ○ 구동 및 마찰부위의 윤활상태를 확인한다. ○ 상부 프레임 유격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 언더플로워는 링크 연결부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모바일 휠 리프트	 ○ 구동장치와 제어부(리모컨포함) 전원상태를 확인한다. ○ 제어신호에 따른 정상작동(상하・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 유압실린더 등 오일류의 누유를 확인한다. ○ 구동 및 마찰부위의 윤활상태를 확인한다. ○ 메인너트 마모상태를 확인한다.
	천장 크레인	○ 구동장치와 제어부(리모컨포함) 전원상태를 확인한다.○ 제어신호에 따른 정상작동(좌우・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갈고리 및 쇠사슬 상하 작동과 손상 상태를 확인한다.
	누출감지 자동 환기설비	○ 메인 패널 LED 및 제어부 전원상태를 확인한다. ○ 환기팬·셔터 수동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누출감지기 모의 구동과 경보 알림상태를 확인한다. ○ 경보비상정지와 복구·검지부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공기 압축기	○ 압축기 작동 및 공기압축 상태 게이지를 확인한다. ○ 압축공기 수분 분리 상태와 오일류 누유를 확인한다.

종류	구분	점 검 요 령
	UT7]	○ 장비 외관, 탐촉자, 연결선, 전원입력, 펄스송출 상태를 확인한다. ○ 측정 전 표준세팅 수치와 상태를 확인한다. ○ 표준결함 정상 탐지신호와 에코신호 곡선을 확인한다. ○ 접촉매질 보관 상태와 잔량을 확인한다.
	열화상 카메라	 ○ 장비와 화면의 외관, 고정, 연결선, 전원입력, 화면송출 상태를 확인한다. ○ 구동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카메라 초점과 온도표시 디스플레이 활성화를 확인한다. ○ 열화상 카메라 설치 위치와 화면상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
	가스 누출량 측정기	○ 장비 외관, 프로브연결, 전원, 디스플레이 표시 상태를 확인한다. ○ 선택 스위치 작동과 펌프 구동 상태를 확인한다. ○ 캘리브레이션 장치를 활용하여 표준수치와 상태를 확인한다.
	가스누출 감지기	○ 장비 외관, 프로브연결, 전원, 적용가스 선택 상태를 확인한다. ○ 필터(외부·내부) 부착 및 오염 상태를 확인한다. ○ 농도조절 스위치 작동과 펌프 구동 상태를 확인한다.
	가스누출 측정기	○ 장비 외관, 프로브연결, 전원, 디스플레이 표시 상태를 확인한다. ○ 필터(외부·내부) 부착 및 오염 상태를 확인한다. ○ 선택 스위치 작동과 펌프 구동 상태를 확인한다.
검사장비	초음파 가스누출 측정기	○ 장비 외관, 음파송출부, 전선마모,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 전원 on/off와 액정ㆍ레이저 포인터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측정감도 변경 스위치와 헤드셋ㆍ스피커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전자장치 진단기	○ 장비 외관·프로브·전선마모·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 전원 on/off와 액정·표시기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 VIMS(또는 VISS)와의 통신상태를 확인한다. ○ 각 기종별 연결부 상태를 점검한다.
	금속두께 측정기	○ 장비 외관·프로브·전선마모·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 전원 on/off와 액정·측정치 영점 보정 여부와 수치를 확인한다. ○ 접촉매질 보관 상태와 잔량을 확인한다.
	도막두께 측정기	○ 장비 외관·프로브·전선마모·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 전원 on/off와 액정·측정치 영점 보정 여부와 수치를 확인한다. ○ 표준시편의 손상 및 수량, 상태를 확인한다.
	적외선 온도계	○ 장비 외관·전원·디스플레이 표시 상태를 확인한다. ○ 전원 on/off와 액정·레이저 포인터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피도체에 따른 장비 온도변화를 확인한다.
	내시경	○ 장비 외관·렌즈·케이블연결·화면 표시 상태를 확인한다. ○ 전원 on/off와 액정·케이플 카메라와 조명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사진촬영 초점·화질과 파일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엔진 시동기	○ 장비 외관·전선마모·집게 상태를 확인한다. ○ 배터리 충전상태와 전압을 확인한다.

종류	구분	점 검 요 령
	버니어 켈리퍼스	○ 장비 외관·내외측버니어 마모상태를 확인한다. ○ 전원 on/off와 영점·고정나사 작동을 확인한다.
	깊이게이지	○ 장비 외관·측정자 마모상태를 확인한다. ○ 영점·다이얼작동·플랫베이스 상태를 확인한다.
	확대경	○ 장비 외관·렌즈 균열이나 손상·눈금상태를 확인한다. ○ 전원 on/off와 조명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합격표 프린터	○ 장비 외관·전원연결·합격롤지 및 먹지 상태를 확인한다. ○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검사장비	검사용 카메라	○ 장비 외관·메모리카드·어깨띠·렌즈 상태를 확인한다. ○ 전원 on/off와 플래시·액정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사진촬영 초점·화질과 파일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광범위 결함검출 카메라	○ 장비 외관・연결단자・카메라 및 LED 조명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장비 통신과 소프트웨어 구동을 확인한다.○ 사진촬영 초점・화질과 파일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철자, 줄자 등 매뉴얼 측정기	○ 장비 외관·부식·눈금손상·꺾임이나 늘어짐 상태를 확인한다.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표5] (제6조의3 관련) <신설 2021.6.23.>

내압용기검사 안전수칙

- 1. 검사장비는 사용 전 일상점검요령에 의한 이상 유무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환기시설을 갖춘 검사장에서 가스누출검사를 실시한 다음 2명이 상호 교차로 육안 및 검사기기로 내압용기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가. 차량 진·출입 시 유도, 엔진정지, 변속기(자동P, 수동중립), 주차브레이크 당김, 고임목 설치 등 안 전조치를 시행하고 검사 실시하며 임의 시동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모바일리프트는 설치작업 시 배선간섭 및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상승 시 평행상태 확인하며 검사 시 안전지지대 설치한다.
- 다. 저상버스검사대 설치는 고정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고 시행한다.
- 3. 수소전기차 내압용기검사는 열화상카메라와 가스누출자동감지 및 환기장치가 정상작동 상태인지 확인하고 검사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 4. 검사 중 가스누출 등 이상 발견 시 상황에 맞추어 조치를 하고 수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5. 검사업무 시 주변의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등 화재 위험성을 제거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 6. 리프트장비 등의 검사장비조작은 담당직원이 작동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 7. 고객은 대기실까지 안내하고, 검사장내 이동으로 실족, 피트추락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 8. 검사장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청결을 유지하고 물기나 기름기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9. 검사 업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1조로 수행하여야 하며 단독작업이 가능한 작업은 제5조3항의 규정에 따른다.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제8조제1항 관련) <신설 2018.7.31.><개정2021.06.23.>

검사기기 관리대장

【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기기표시】

기 기 명	자산관리번호	
제 작 사	기 기 형 식	
제작번호	구 입 일 자	

【이력사항】

일 자	사유 및 기타사항

【수리사항】

일 자	고장원인	수리내용 및 기타사항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개정 2017.12.4., 2024.3.18.>

검사기기 고장발생(수리) 보고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경유)

제목 검사기기 고장 발생(수리) 보고서

발생일시	완료일시
기 기 명	제작번호
자산관리번호	기기형식
고장요소	
고장내용	
수리내용	
조치사항	
수리부품	
기타사항	

소관부서장 직원명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

각인대장

(주무 부서용)

제조 연월일	각인명	관리 번호	압형	확 인 부서장 (인)	지급일	지급처	지급자 (담당)	확 인 부서장 (인)	반납일	반납 사유	인수자 (담당)	확 인 부서장 (인)	폐기일	확 인 부서장 (인)

18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제11조제3항 관련)

각인관리대장

(검사장 용)

번호	각인명	관리번호	압형	수령일	관리 책임자 (인)	반납사유	반납일	관리 책임자 (인)	비고

주) 각인 관리책임자가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고란에 인수·인계 사항(12개 인수 등)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지 제5호서식](제11조제4항 관련)

각인사용대장

(검사장 용)

번호	반출	사항	반입	사항
민오	반출일시	관리책임자(인)	반입일시	관리책임자(인)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지 제6호서식](제14조 관련)<개정 2017.12.4, 2018.1.5>

자동차 내압용기 ○○출장검사장 시설사용계약서

계약번호 〇〇본부 2000-00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업체명)의 시설을 내압용기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하여해당 시설을 내압용기 검사 시설로 사용함에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관(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자동차 내압용기 출장검사장 시설 사용계약"(이하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1조(목적) "공단"은 본 사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시설을 내압용기 출장검사장 용도로 지정하여 내압용기 검사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 제2조(업무의 범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내압용기 정기검사, 내압용기 수시검사, 내압용기 장착검사
- 2. 제1호의 업무이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검사 또는 업무
- 제3조(계약기간) 사용 계약기간은 계약 개시일 부터 기산하여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사용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용 계약 기간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출장검사 횟수 및 요일) ① "공단"은 본 사용계약이 체결되면 출장검사 횟수(주당), 출장검사일, 출장검사시간 등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검사 횟수, 검사일, 검사시간 등은 검사 물량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변경된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사용계약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토 지	지목	면적		
건 물	구조	용도	면적	

-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는 연간 사용료 기준으로 정하고, 연간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다만, 전기료는 "공단"이 사용하는 목적물에 별도 설치된 계량기에 의한 사용료는 "공단"이 납부토록 하고, 수도 사용료(화장실 포함)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연간사용료: 000원[₩000(부가세별도)]
- ② "공단"은 연간사용료를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아래의 은행계좌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③ 제2항에 의한 지급기한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 부납할 수 있다.
- 제7조(내압용기 검사시설의 관리유지) "계약상대자"는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기 등과 건물관리유지에 필요한 수도 등의 제반 필요사항을 제공하되 "공단"은 사용계약 내용물 내부와 입구 청소를 책임진다.
- **제8조(업무방해 금지)**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자동차검사 등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주차장 사용 등)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 차가 대기할 수 있는 주차장 및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 제10조(통신시설 등) 전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공단"이 설치 및 유지보수하며 사용 요금은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 제11조(재산보호) ① "계약상대자"의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공단"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도난 등 사용계약내용물 내에서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공단"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계약 시설에 설치 또는 비치한 검사용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난,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허가 없이 "공단"의 계약 시설 및 "공단"의 검사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사용계약 내용물 내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검차장 및 사무실 등 사용계약 내용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검사업무 수행에 방해될 자동차 부품, 연료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 2. 폭발물 등의 위험성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재산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 3. 관상용 이외의 동식물을 양육하거나 공중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거나 방해 가 되는 행위
- 4. "공단"의 동의 없이 "공단"이 설치한 시설물, 광고물 및 간판 등을 파손·변경 하거나 검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13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계약 내용물 및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파괴한 경우 "공단"은 이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손해 발생액의 산정은 배상당시의 시가에 의거 "공단"과"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14조(계약해지 등) ① "공단"이 사용기간 중 정부의 정책으로 또는 검사시설 추가 확보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사유 및 일자를 통보하고 쌍방 혐의하여 해지한다.
- ③ 계약해지 시 "공단"이 지급한 연간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계약종료)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되며, 이 경우 "공단"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본 계약의 사용계약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된 경우
- 2.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 3. "공단"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따른 경우
- 제16조(불가항력) "공단"은 지진, 풍수해, 전쟁, 폭동 기타 법률상 불가항력 사유나그 외 "공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입은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제17조(계약의 변경)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조건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 **제18조(관할 법원)**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 및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 및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내압용기 출장검사장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 내압용기검사업무규정 [별지 제7호서식](제9조 관련)<신설 2020.3.5.><개정 2021.03.29., 2024.3.18.>

검사기기 일상 점검표

구분	날짜 (월/일)	(/)	(/)	(/)	(/)	(/)	(/)
1	날 (책임)검사원																		
기 기 명	인 (책임)검사원																		
명	조명																		
자동	- 저상버스검사대																		
저	상버스검사대																		
	피트리프트																		
	소형리프트																		
모1	바일 휠 리프트																		
	천정크레인																		
누출	들감지 환기설비																		
	공기압축기																		
	UT7]																		
Ç	결화상카메라																		
가:	스누출량측정기																		
가	·스누출감지기																		
7}	·스누출측정기																		
초음3	파가스누출측정기																		
전	.자장치진단기																		
금	속두께측정기																		
도	.막두께측정기																		
- 2	적외선온도계																		
	내시경																		
	엔진시동기																		
버	니어켈리퍼스																		
	깊이게이지																		
	확대경																		
	납격표 프린터																		
검사용 카메라																			
광범위결함검출카메라																			
(Extended Defect Detection Camera)																			
철자, 줄자 등 매뉴얼 측정기																			
ĺ	1 3 411 2 10:1																		
기타																			
	- 1 .1 -1																		
	특 이 사 항																		

《주》 1. 양호 : V, 교환 : X, 망실 : M, 도색 : P, 조정 : A, 파손 : C, 주유 : L 2. 매일 검사기기 사용 전에 점검. 3. 특이사항 : 검사기기 고장발생 등 기재란을 초과할 경우 및 주요사항은 후면에 관련서류를 첨부할 것.